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31
----------	------

발의연월일 : 2016. 12. 8.

발의자 : 정종섭 · 광양도 · 유민봉  
정성호 · 함진규 · 염동열  
추경호 · 윤종필 · 황주홍  
엄용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등의 수용이나 사용 또는 손실보상금에 관한 분쟁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임.

이와 같이 토지수용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토지 등에 관한 수용 등 의 업무는 그 공공성이 다른 위원회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 위원회를 구성하는 개별 위원들도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공정성, 중립성 및 청렴성이 강하게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별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별칙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수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해당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7조의2 신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외부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토지 등 수용·사용에 관한 재결 업무의 전산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수용 등 재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0조의2 신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에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재결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p>
<u>&lt;신 설&gt;</u>	<p>제60조의2(재결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등 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업 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련 정 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재 결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 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 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p>

부령으로 정한다.